

의안번호	2201214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 8. 12.
추계번호	24C15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2제5항(다함께돌봄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2제5항(다함께돌봄센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안 제44조의2제5항)

-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년말 기준 전국에 1,04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¹⁾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

[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3년말 기준)

시도별	설치·운영 수(개소)	시도별	설치·운영 수(개소)
서울	254	강원	37
부산	63	충북	34
대구	13	충남	42
인천	31	전북	49
광주	29	전남	35
대전	30	경북	67
울산	28	경남	31
세종	8	제주	6
경기	291	계	1,048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에는 56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 125개소의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되면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수가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는 향후 건설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다함께돌봄센터의 확대 규모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

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계하기 곤란함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도 규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하였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